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82 발의연월일: 2021. 4. 14.

발 의 자: 구자근・박성민・정진석

서병수 · 임이자 · 김선교

김영식 · 김석기 · 윤두현

장제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 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을 증가시켜 산 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산업단지의 가격경쟁력은 산업단지 분양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부담 가중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산업단지는 생산공간과 물적 기반을 공급하여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 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지역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 26년 12월 31일"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 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70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①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	
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	
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u>	<u>취</u>
<u>득세의 100분의 35</u> 를, 조성공사	<u> 득세의 100분의 50</u>
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서는 <u>재산세의 100분의 35(수</u>	<u>재산세의 100분의 50(수</u>
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	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
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u>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0)</u>
각각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경	<u>2026년 12월 31일</u>
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l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	
징한다.	<u>.</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③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 나. (생 략)

2. (생략)

1
<u>2026년 1</u>
<u> 2월 31일</u>
 취득
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
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
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
분의 70)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